

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10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예비조사”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과 본교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원격교육연구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임명직 위원은 각 단과대학의 평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검증의 범위 및 절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
 -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및 연구부정행위를 묵인·방조·은폐·강요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제보방법)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 전화,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

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피조사자 보호) ① 피조사자는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및 관련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검증원칙 및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연구가 수행된 기간이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연구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제보내용이 제1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와 본조사 실시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결과)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및 기타 관련 증거자료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2. 조사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할 것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검증 결과를 확정하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본조사 결과)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검증 대상인 연구행위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및 기타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및 진술내용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의무) ① 총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검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총장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협약에 따른 조치와는 별개로 총장에게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무혐의로 판정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총장 및 관계교직원 등 재직 중에는 물론 그 직을 그만둔 후에라도 조사·심의·의결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 9. 21. 규칙 제1013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현재 진행 중인 교내·외 연구과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